

국립생태원 공고 제2018-5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일부도면(안)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국립생태원장

2017년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개정고시(안) 수정·보완 국민열람 수정 공고

1. 대상지역 : '추자 336021' 도엽 등 209개 도엽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도면은 붙임 참조)

번호	도엽번호 및 도엽명		번호	도엽번호 및 도엽명	
1	336021	추자	106	369052	송하
2	345083	우이	107	369054	원리
3	345133	소흑산	108	369061	소태
4	345162	거차	109	369062	평해
5	346131	관매	110	369063	신기
6	347143	덕촌	111	369064	영해
7	348052	두미	112	369101	영덕
8	348054	갈도	113	369102	경정
9	348061	육지	114	369104	강구
10	348063	좌사	115	376023	교동
11	356063	위도	116	376024	철산

번호	도엽번호 및 도엽명		번호	도엽번호 및 도엽명	
12	356094	송이	117	376032	판문점
13	356102	석남	118	376033	옥림
14	356103	칠산	119	376034	갈현
15	357083	수동	120	376041	장파
16	357084	신원	121	376042	마지
17	357121	생초	122	376043	문산
18	357122	산청	123	376044	광적
19	358052	구정	124	376061	석모
20	358053	봉계	125	376062	강화
21	358054	합천	126	376071	통진
22	358063	쌍책	127	376072	김포
23	358064	대합	128	376081	일산
24	358073	창령	129	376082	고양
25	358074	인산	130	376093	선미
26	358083	유천	131	376103	자월
27	358084	남명	132	376131	문갑
28	358091	가회	133	376132	덕적
29	358092	삼가	134	376133	선갑
30	358093	정평	135	376141	승봉
31	358101	부림	136	376142	영흥
32	358112	오방	137	376144	난지
33	358121	밀양	138	376153	석문
34	358122	내포	139	377011	동두천
35	358123	봉림	140	377012	신읍
36	358124	물금	141	377013	덕정
37	358161	무계	142	377014	송우
38	358162	김해	143	377021	기산
39	358164	다대	144	377022	적목
40	359053	상북	145	377023	연하
41	359054	언양	146	377024	상천
42	359063	울산	147	377032	춘천
43	359064	정자	148	377033	가평
44	359091	통도사	149	377034	철전
45	359092	삼호	150	377041	신북
46	359093	양산	151	377043	학곡
47	359094	좌천	152	377051	의정부

번호	도엽번호 및 도엽명		번호	도엽번호 및 도엽명	
48	359101	남창	153	377052	양지
49	359102	방어	154	377054	덕소
50	359103	월내	155	377061	마석
51	359131	동래	156	377062	청평
52	359132	기장	157	377071	모곡
53	359133	부산	158	377072	반곡
54	365162	황도	159	377081	굴지
55	365164	어청	160	378011	신남
56	366012	방갈	161	378012	금부
57	366014	소원	162	378013	도관
58	366021	고파	163	378014	동창
59	366022	대산	164	378022	방동
60	366023	태안	165	378023	방내
61	366024	서산	166	378024	창촌
62	366031	고대	167	378031	갈천
63	366032	당진	168	378032	어성전
64	366033	운산	169	378033	비로
65	366034	면천	170	378034	퇴곡
66	366043	합덕	171	378041	주문진
67	366044	아산	172	378043	사기막
68	366051	가의	173	378044	강릉
69	366052	근흥	174	378052	서석
70	366061	달산	175	378061	흥정
71	366062	부석	176	378062	노동
72	366063	안면	177	378063	진조
73	366064	간월	178	378071	진부
74	366071	해미	179	378072	차항
75	366072	덕산	180	378081	구산
76	366081	예산	181	378082	안인
77	366082	대술	182	379051	정동
78	366094	길산	183	379053	목호
79	366101	장고	184	386163	구화
80	366103	호도	185	386164	백학
81	366131	중청	186	387131	대광
82	367013	온양	187	387132	철원
83	367014	천안	188	387133	연천

번호	도엽번호 및 도엽명		번호	도엽번호 및 도엽명	
84	367051	광덕	189	387134	영평
85	367064	외천	190	387141	지포
86	367082	삼송	191	387142	와수
87	367111	회북	192	387143	영북
88	368012	수산	193	387152	상서
89	368013	안보	194	387154	화천
90	368014	용연	195	387162	방산
91	368023	동노	196	388094	가전
92	368024	석묘	197	388102	거진
93	368033	풍기	198	388103	향로봉
94	368034	영주	199	388104	간성
95	368043	원둔	200	388113	교암
96	368044	재산	201	388131	임당
97	368071	감천	202	388133	용하
98	368072	용천	203	388134	인제
99	368081	예안	204	388141	한계
100	368082	인계	205	388142	신선
101	369013	당동	206	388143	가리
102	369014	발리	207	388144	설악
103	369021	하원	208	388153	양양
104	369024	기성	209	388154	상운
105	369051	영양	-	-	-

4.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 도면(1:25,000축적)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립생태원 홈페이지(<http://www.nie.re.kr>)에 45일간(공휴일 제외) 공개합니다.

5. 의견제출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45일내(공휴일 제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이의신청서)를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립생태원장(참조 : 생태평가연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에 대한 이의신청서(붙임 양식)

-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지역 위치, 조정요구내용, 이의제기 사유, 연락처, 관련 서류 등

나. 등급 지정 오류나 자연적 또는 적법한 토지피복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5부)

- 이의신청지역에 대해 당해 또는 전년도의 동·식물상, 식생보전등급, 지형보전등급 등에 대한 관련 분야 전문가(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등)의 조사결과서(2계절) 및 소견서 첨부

※ 세부내용은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제16조제2~3항 참조

- 국민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계절 조사를 실시·완료 후 해당 조사결과서를 추가 제출(조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요망)

가.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안)에 대한 의견서(5부)

※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방법 :

- 공문(전자문서) :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립생태원장에게
의견 제출

※ 문의 : 국립생태원 생태평가연구실(041-950-5402, 5367, 5826, 5861)